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

제2조제7항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제1호 및 제2호 중 “관련된 결정에 관한”을 각각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9.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14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제3항의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보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목까지”를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9호”로 한다.

제28조제1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의 보증금(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⑥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⑥ (현행과 같 음)
⑦ 법 제2조제1호의3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⑦ ----- -----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 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1. ~ 6. (현행과 같음)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
⑧ ~ ⑬ (생 략)	8. ----- 제7호-- ----- ----- -----
⑭ 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 회생·개인회생과 <u>관련된 결 정에 관한</u> 정보	⑧ ~ ⑬ (현행과 같음) ⑭ -----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	1. ----- ----- ----- <u>관련된</u> --- ----- 2. ----- -----

· 복권과 <u>관련된 결정에 관한</u> 정보 3. ~ 6. (생략) ⑮ ~ ⑰ (생략) ⑱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8. (생략) ⑲ ~ ㉔ (생략)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 ⑧ (생략) <u><신설></u>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생략)	----- <u>관련된</u> ----- -- 3. ~ 6. (현행과 같음) ⑮ ~ ⑰ (현행과 같음) ⑱ ----- ----- -----. 1. ~ 7. (현행과 같음) 8. 「<u>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u>가상자산사업자</u> 9. 「<u>새마을금고법</u>」 제73조의3에 따른 <u>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u>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⑲ ~ ㉔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제3항의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
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1. ~ 8. (생략)

<신설>

③ ~ ⑥ (생략)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
용) ① (생략)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
터 허목까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29. (생략)

③ ~ ⑪ (생략)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
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② ~ ⑩ (생략)

⑪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
건에서의 변제 정보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
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
9호 --.

1. ~ 29. (현행과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
용에 대한 동의)

② ~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의 보증금(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⑫ ~ ⑭ (생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623